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251 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모집 공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기업에 취업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취업교육을 수행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모집 공고 주요 내용 및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신청자격	▲ **교육사업 운영 경력이 10년 이상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중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제한>** **·공고일부터 이전 3년간 「직업능력개발법령」, 「평생교육법령」 등 신청기관이 적용받는 교육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 단,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시정명령 또는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사항은 제외
취업교육기관 지정기간	▲ **'19. 8.5.부터 최대 3년 범위 내**
신청서 제출기한	▲ **'19. 6.21(금), 18:00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우편접수, 제출기한까지 접수된 건에 한하여 유효** * 신청서 서식 등 제출서류는 'Ⅳ. 신청서 서식 등 제출서류' 참조
제 출 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08호 * 문의: 044-202-7147, wjswhdvh1@korea.kr (전종포 사무관)

Ⅱ.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수행업무 및 현황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주된 업무:

①외국인노동자 취업교육, ②외국인노동자 건강검진 및 전용보험 가입 지원, ③고용사업주 교육, ④외국인노동자 공항 인수 및 사업주 인계 등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현황: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 현재 '비전문 취업(E-9)' 취업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가, '방문취업(H-2)' 취업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

1 외국인노동자 취업교육 개요(E-9 기준)

○ **(교육목적)**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장 조기적응 지원 및 생산성 제고

○ **(교육방식)** 외국인노동자 입국 직후 공항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신병 인수 후 **2박3일(16시간) 동안 집합교육*(합숙)**

* 같은 국적의 외국인노동자로 학급을 편성하고 해당국 언어가능자가 교육에 참여(통역)

○ **(교육내용 및 시간)** 소양교과(2과목) 및 전공교과(1과목), 총 16시간

과 목	주요 교육내용	교육시간
한국의 직장문화	직장생활, 직장예절 및 기숙사 생활 등	1시간
관계법령 및 고충상담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및 기초생활법률 * 이탈방지 교육, 전용보험 관련 교육 포함	5시간
	고충처리 및 상담절차(기관 안내) 성희롱 예방교육 * 성폭력·성매매 예방, 모성보호 교육 포함	3시간
산업안전보건 및 기초기능	<산업안전보건> 안전표지, 안전일반 및 작업안전(업종별) *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대책 포함 <기초기능> 업종별 기초기능	7시간

○ **(교육비)**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주가 업종별로 고시된 인당 취업교육비*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납부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교육 종료 후 수료인원에 대한 취업교육비를 취업교육기관에 지급

* **제조업 · 서비스업: 195천원, 농축산업 · 어업: 210천원, 건설업: 224천원**
ㄴ취업교육비를 납부한 사업주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훈련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취업교육기관이 진행

2 외국인노동자 건강검진 및 전용보험 가입 지원

○ **(건강검진)** 외국인노동자 교육(1일차) 직전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6]에 의거 건강진단실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건강진단 실시

○ **(전용보험)** 외국인노동자가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의무 및 내용, 보험금의 지급요건 및 수령 절차 등을 안내하고 가입 지원

- 또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 가입 의무 및 내용, 보험금의 지급 요건 및 수령 절차 등을 안내하고 가입 지원

3 고용사업주 교육

○ 외국인노동자 인계 전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아래 교육 실시

-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체류 방지 및 고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 표준근로계약서 이행 등 사용자의 의무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및 「출입국관리법」 주요내용 등

4 외국인노동자 공항 인수 및 사업주 인계

○ **(입국 직후) 외국인노동자 인수(한국산업인력공단 → 취업교육기관)**

- 인천공항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인수받아 해당 기관의 취업교육장으로 이동

○ **(취업교육 중) 외국인노동자 관리**

- 취업교육기간 중 외국인노동자의 교육장 이탈 방지 등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기숙사 사감 배치 등)

- 외국인노동자 신상에 이상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계 기관에 즉시 보고

○ **(취업교육 종료 후) 외국인노동자 인계(취업교육기관 → 고용사업주)**

- 취업교육 종료 후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차질 없이 인계

5 교육운영 현황 등 보고

○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교육실시 현황 등 취업교육 운영상황을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계 기관에 보고

6 기 타

○ 외국인 취업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취업교육기관이 수행하는 교육대상자 및 교육일정 등은 변경 가능

<참고> '방문취업(H-2)' 자격의 외국국적 동포 취업교육비(합숙 148천원, 비합숙 102천원 등)는 외국국적 동포가 취업교육기관에 직접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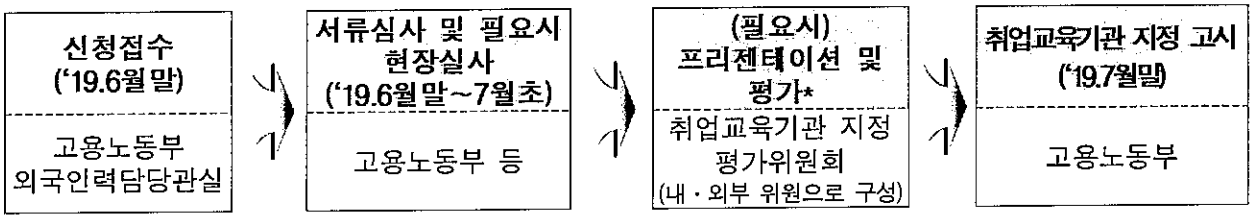
Ⅲ. 신청서 접수 및 선정절차

□ **(신청기한 · 접수) '19.6.21.(금) 18:00까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에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우편 접수**

* 신청서 서식 및 구비서류 상세내역은 'Ⅳ. 신청서 서식 등 제출서류' 참조

* 제출서류는 A4용지 크기로 양면인쇄 또는 복사하여 제본·편철 후 기관별 10부 제출(파일은 USB 또는 e-mail로 별도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 및 지정절차)** 지정기준 충족여부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



* '외국인 취업교육 운영 계획'에 대한 대면 발표(PPT 또는 한글) 및 평가를 진행

□ **(지정 결과 발표)** '19.7월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지정 고시

Ⅳ. 신청서 서식 등 제출서류

□ 신청서 서식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신청기관	①법인등록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법 인 명		④대 표 자		
	⑤소 재 지		연락처	⑥사 무 실	
				⑦휴대전화	
				⑧F A X	
				⑨E-mail	
⑩교육가능 인원		연간 교육인원	○○○명		
		1회 교육인원	○○○명		
⑪교육 희망 업종					
지정기준 충족 여부	⑫인 력 현 황	○교육총괄 인력: 0명, 교육시행 인력: 0명 ○교육담당 강사: 0명			
	⑬시 설 현 황	○행정사무 공간: 00㎡ 00개소 ○강의실: 00㎡ 00개소, 00㎡ 00개소.... ○기숙사: 00개소(1실 0명), 00개소(1실 0명)... ○식당: 00명 수용 가능(00㎡)			
⑭교육사업 운영경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및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1부
3.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교육사업 운영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0㎜×297㎜[백상지 80g/㎡]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 등본 1부

④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1부

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요건('별첨1'의 [별표1] 및 [별표4] 참조)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별첨 2] '인력 및 시설 현황 등 제출양식'에 의거 현황자료 제출

• 인력현황은 '비고'란에 내부채용 또는 외부 위촉 여부를 기재하고, 해당 기관에 재직 또는 위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제출

* 내부채용 인력은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재직확인서' 등 관련 서류, 외부 위촉인력은 위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촉 계약서 또는 위촉 승낙 확인서 사본 등을 제출하고, 강사는 '별첨1'의 [별표4]의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격증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외국인 취업교육 담당 임원의 결격사유 유무 조회를 위한 <첨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는 제본·편철하지 않고 원본을 별도 제출

• 시설·장비 현황은 교육장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비고'란에 자체 보유 또는 임차 여부를 명시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평면도 등

⑥ 교육사업 운영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실제 교육사업 개시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교육사업 수행을 위해 소관 부처에서 발급한 허가증, 사업개시 신고증 등

별첨 1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4]

1 [별표 1]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기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기준(제2조 관련)

1. 인력 기준

가. 교육총괄: 3명 이상

○ 교육계획 수립·조정, 교재 및 시청각매체 보급관리, 전산운영 및 통계처리 등

나. 교육시행: 2명 이상

○ 교육시행·관리, 근로자 인도·인수 및 기숙사 사감업무 등

연간 교육대상 외국인근로자 인원별 기준	확보기준	
	총괄관리인력	교육시행인력
5,000명 이하	3명(기본)	2명(기본)
5,000명 초과 ~ 10,000명 이하	6명 (기본 5명 + 총괄관리 또는 교육시행 인력 1명)	
10,000명 초과 ~ 15,000명 이하	7명 (기본 5명 + 총괄관리 또는 교육시행 인력 2명)	
15,000명 초과 ~ 20,000명 이하	8명 (기본 5명 + 총괄관리 또는 교육시행 인력 3명)	
20,000명 초과 ~ 25,000명 이하	9명 (기본 5명 + 총괄관리 또는 교육시행 인력 4명)	
25,000명 초과 ~ 30,000명 이하	10명 (기본 5명 + 총괄관리 또는 교육시행 인력 5명)	
30,000명 초과 ~ 35,000명 이하	11명 (기본 5명 + 총괄관리 또는 교육시행 인력 6명)	

※ 연간 교육인원이 3,000명 이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명 이상의 전담인력 및 4명 이상의 겸직인력을 갖추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다. 교육담당 강사

1) 언어가능 강사: 송출국가별(소수업종은 특화국가에 한정한다) 언어가능자를 확보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가능한 통역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되, 연간 국가별 취업교육 인원에 따라 아래의 언어가능자를 반드시 전담인력으로 확보

연간 국가별 취업교육 인원	언어가능자 확보인원
3,000명 ~ 9,000명 미만	1명
9,000명 ~ 15,000명 미만	2명
15,000명 이상	3명

※ 언어가능강사는 각 학급별 담임교사 역할 수행

2) 교과목 강사: 별표 4의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강사자격을 충족하는 교과목별 전담강사 확보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교육이 가능한 교과목 강사활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되, 기관별 연간 취업교육 인원에 따라 아래의 전담강사를 반드시 확보

기관별 연간 취업교육 인원	전담강사 확보인원
15,000명 ~ 30,000명 미만	1명
30,000명 이상	2명

라. 담당 임원 등이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최근 1년 이내에 외국인 관련 업무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

2. 시설기준

가. 행정사무 공간

1) 보유형태: 기관 자체소유 또는 3년 이상(2년간 임차계약 시 계약갱신이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용 가능한 임차시설
2) 사무실 규모: 직원 1명당 7㎡ 이상

나. 강의실

1) 수용인원 1명당 전용면적은 1.2m^2 이상, 학급당 최대 수용인원은 60명(다만, 장관이 승인한 경우 60명을 초과할 수 있다)
2) 일시 입국에 대비하여 평시 수용능력의 100분의 110 이상 교육장 확보

※ 연간 취업교육 대상인원별 강의실 기준

연간 취업교육 대상인원	1회 교육 기준인원	강의실 면적 (강의실 수)
5,000명	106명	127㎡이상 (2개 이상)
10,000명	212명	254㎡이상 (4개 이상)
15,000명	317명	380㎡이상 (6개 이상)
20,000명	423명	508㎡이상 (8개 이상)
25,000명	529명	635㎡이상 (9개 이상)
30,000명	635명	762㎡이상 (11개 이상)

다. 기숙사

○ 수용인원 1명당 전용면적은 5㎡(±0.1) 이상, 1실당 6명 이하 수용

※ 연간 취업교육대상 인원별 기숙사 확보(전용면적) 기준

연간 취업교육 대상인원	1회 교육 기준인원	호실 수(면적)		
		1실 2명	1실 4명	1실 6명
5,000명	106명	53개 (530㎡이상)	27개 (540㎡이상)	18개 (540㎡이상)
10,000명	212명	106개 (1,060㎡이상)	53개 (1,060㎡이상)	36개 (1,080㎡이상)
15,000명	317명	159개 (1,590㎡이상)	80개 (1,600㎡이상)	53개 (1,590㎡이상)
20,000명	423명	212개 (2,120㎡이상)	106개 (2,120㎡이상)	71개 (2,130㎡이상)
25,000명	529명	265개 (2,650㎡이상)	133개 (2,660㎡이상)	89개 (2,670㎡이상)
30,000명	635명	318개 (3,180㎡이상)	159개 (3,180㎡이상)	106개 (3,180㎡이상)

라. 식당

○ 홀의 전용면적은 1명당 1.46㎡ 이상

※ 연간 취업교육대상 인원별 식당(홀) 확보기준

연간 취업교육 대상인원	1회 교육 기준인원	식당홀 전용 면적
5,000명	106명	155㎡이상
10,000명	212명	310㎡이상
15,000명	317명	463㎡이상
20,000명	423명	618㎡이상
25,000명	529명	772㎡이상
30,000명	635명	927㎡이상

2 [별표 4] '취업교육 강사 자격기준'

취업교육 강사 자격기준(제7조 관련)

1. 언어가능 강사

가. 해당 송출국가 언어로 강의가 가능한 사람

나. 강의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해당 송출국가 언어로 강의가 가능한 사람

2. 교과목별 강사

분 야	자 격 기 준
한국의 직장 문화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준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당 분야 소양을 갖춘 사람 2. 1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해당 분야 소양을 갖춘 사람 3. 공무원 또는 정부출연기관 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해당 분야 소양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산업 안전 보건	1. 국가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기초 기능	1. 국가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관계법령 및 고충상담	1.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또는 정부출연기관 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해당 분야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별첨 2 인력 및 시설 현황 등 제출양식

1 조직 현황

○**(기관 전체 조직)** ○○등 00개 본부, 00개 부(또는 팀)

- 조직도 삽입 또는 별첨

○**(취업교육 담당조직)** ○○등 00개 본부, 00개 부(또는 팀)

- 조직도 삽입 또는 별첨

2 인력 현황

가. 교육총괄인력

연번	성명	입사일	담당업무	비고

나. 교육시행인력

연번	성명	입사일	담당업무	비고

다. 강사인력

연번	성명	입사일	담당과목	자격	비고

※ 첨부서류

1. 이력서
2. 강사 자격 관련 자격증 또는 증명서류
3.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 계약서(비전임의 경우)

210㎜×297㎜[백상지 80g/㎡]

3 교육장별 시설·장비 현황

(단위: 개소, ㎡, 명, 개)

구분 / 교육장명	전용 면적	사무실			강의실			기숙사			식당		교육장비		비고
		수	면적	근무 인원	수	면적	수용 인원	형태	수	수용 인원	수	면적	장비명	수량	
		계			계			계			계				

※ 첨부서류

1.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2. 건축물 대장
3. 평면도

<첨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

이용 사무 (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결격사유 유무 조회**	

2. 이용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9년 6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별첨 3 고용허가제 개요 및 외국인 취업교육 현황

□ **(고용허가제 개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동남아 등 **16개 송출국*으로부터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중국, 우즈벡,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파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라오스

○ **(체류기간)** 1회 최대 4년10개월 체류 가능, 원칙적으로 출국 후 6개월 이후 재입국 가능

○ **(허용업종)**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건설업

<업종별 도입국가 현황>

업종	도 입 국 가
제조업(16개국)	송출국 전체
농축산업(6개국)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네팔, 베트남, 중국
어업(5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동티모르, 베트남, 중국
건설업(6개국)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베트남, 중국
서비스업(3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 **(취업교육 현황)** 매년 국가별*·업종별 도입인원에 따라 교육인원이 유동적임

* 최근 3년간 평균 교육인원 3,000명 이상 송출국: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구 분	교육인원(단위: 명)		
	'16년	'17년	'18년
소 계	52,726	41,255	44,262
제조·서비스업	41,166	30,783	35,293
농축산업	6,483	6,180	4,925
어 업	2,505	2,455	2,644
건설업	2,572	1,837	1,400

별첨 4 외국인노동자(E-9) 도입 절차

* 근로계약 체결 및 사증발급 후 입국

① 한국어시험 및 외국인노동자 명부 작성

(송출국가 정부 ↔ 우리나라 정부)

: 한국어시험 성적에 따라 송출대상인력 선정, 외국인 구직자명부 작성

⬇

② 외국인노동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

(사용자 ↔ 고용노동부)

: 내국인 구인노력(7~14일) 후 고용허가 신청
(농축산업, 어업: 3~7일)

: 고용센터는 3배수 추천, 사업주는 적임자 선정

: 고용센터는 고용허가서 발급

⬇

③ 근로계약 체결

(사용자 ↔ 외국인노동자)

: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 인력공단을 통해 해외 송부하고 노동자 확인·서명

⬇

④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용자 ↔ 법무부)

: 표준근로계약서는 다시 공단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 사용자는 사증발급인정서(CCVI) 신청

⬇

⑤ 외국인노동자 입국

(산업인력공단 ↔ 외국인노동자)

: 공단: CCVI 발급자 대상 입국계획 수립

: 송출기관: 사전 취업교육, 사증발급, 입국 지원

⬇

⑥ 외국인노동자 고용지원 및 체류 관리

(사용자 ↔ 고용부, 법무부)

: 입국 후 취업교육, 건강검진, 전용보험 가입 후 사업주 인도